					IV-F-4
제목	국문	의료방해행위시의 대처방안 사례연구			
	영문	Case Study on the Conter Measures for the Interference of Medical Practic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신헌준[1], 신현호[2], 손명세[3], 장욱[4] 변호사[1], 변호사[2], 연세대 예방의학교실[3],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4]			
	영문	Hunjun Shin[1], Hyunho Shin[2], Myongsei Sohn[3], Wook Jang[4] *Lawyer[1], Lawyer[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df Medicine[3], Department of Medical Law & Ethics Yonsei University[4]*			
분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표자	신헌준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 년 12 월 31 일				

1. 목적

오늘날 환자의 권리의식 증대 등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합의, 조정 또는 소송 등의 방법을 원용하여 합법적인 분쟁해결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직도 물리적인 힘이나 사적 강제수단에 의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의료사고 환자 및 가족들의 폭행 등의 행사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서 의업을 포기하게 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러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의료법 제 12 조 제 2 항은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규정을 통해 진료방해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 등의 의료방해행위시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제방법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방법

병원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사의 진료방해행위 및 업무방해행위의 태양을 법원에 제기된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으로 의료방해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당해 법원에서의 판결요지를 정리하고 논점이 된 방해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결과

의사의 진료방해뱅위 및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업무방해죄 인정사례

응급처지 중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가족들이 진상규명 및 보상을 요구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병원 내에서의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검찰은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

엑시레이머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한 트집을 잡아 당해 의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폭언을 일삼고,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가로막았다(97 가합 29337 판결). 이에 당해 병원과 의사는 진료손실 및 폭행등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9,000 여만원과 3,000 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당해 병원에 대해 1,600 만원을 당해 의사에게는 1,000 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3. 업무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인정사례

A 병원의 노조가 병원구내에서 확성기 등을 통해 농성을 하고, 병원을 비난하는 현수막 및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병원은 진료방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노조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을 내는 행위는 병원의 진료업무와 환자를 위해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가처분을 구하는 방법은 환자의 유가족이 의료기관의 과실을 주장하며 농성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4.광의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진료비청구나 병실명도청구를 인정한 사례

치료도중 의료기관의 과실로 뇌손상의 장애를 입게 되었음을 기화로 4 년간 1 인실에만 입원한 채 병원의 하급병실로의 전원요구를 거부하여 진료비가 2 억 7 천여만에 이른 사건(98 가합 98361)에서 환자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병원은 진료비지급청구를 하게되었다. 이에 법원은 일정기간 이후 환자가 1 인실에 머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고집함으로써 진료비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진료비 7천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5.영안실의 안치실에 있는 시체 명도를 구하는 사례(진행중)

부검결과 망인의 특이체질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안치실에 있는 아들의 사체를 1 년 6 개월 방치한 유가족에 대해 사체의 인도 안치실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고, 이에 법원은 조정과정에서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환자 유가족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최종판단과 집행절차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4. 고찰

본 연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진료방해 행위들을 살펴보았고, 현재 법원에서 진료방해 행위 및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의료법에 의거해 처벌하기 보다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진료방해행위들은 의사와 환자 모두가 피해자일 수 밖에 없고 의료사고를 합리적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고, 밝혀진 과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